

●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-152호

「선박안전법」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른 증가산금 부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27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증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

1. 과태료 대상자

소유자명	법인번호	주 소
주식회사 예*	110111-*****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

2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- 부과원인 : 선박검사 미수검
- 근거법령 : 「선박안전법」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[별표2]

3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- 「선박안전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, 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 총 부과금액 14,358,500원

선 박 명	기본과태료	가산금	증가산금 (1.2%×16개월)	합계	산정근거
아일랜드 에프 1호	1,750,000원	52,500원	336,000원	2,138,500원	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 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)
아일랜드 에프 2호	5,000,000원	150,000원	960,000원	6,110,000원	
아일랜드 에프 2호	5,000,000원	150,000원	960,000원	6,110,000원	

4.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

-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부과하며, 과태료,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5. 안내사항

- 부과된 과태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 (064-720-2639)에서 독촉장을 발급 받아 2026. 9. 30.(수)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- 추가 문의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관(064-720-2639)으로 문의 바랍니다.